

항공·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11.05.01		16		
2	2011.09.01		17		
3	2013.08.27		18		
4	2014.03.04		19		
5	2015.08.01		20		
6	2016.03.01		21		
7	2017.03.17		22		
8	2018.05.10		23		
9	2019.03.01		24		
10	2020.02.24		25		
11	2024.01.18		26		
12	2024.11.20		27		
13			28		
14			29		
15			30		

항공·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본교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함)이 항공·경영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대학원 학사업무의 처리는 이 시행세칙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원 학칙과 이 시행세칙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입학 및 편입학

제3조(지원 및 입학절차)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의 지원 및 입학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지원서류 제출
2. 관련전형 실시
3. 대학원위원회 사정
4. 합격자 발표
5. 입학등록

제4조 삭제 <2019.03.01.>

제5조(입학전형 방법) 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전형방법은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으로 한다.

②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은 '대학원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에 의해 실시한다.

<개정 2020.02.24.>

제6조(지원자격) 석사학위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예정자 포함)로 한다.

제7조(서류전형, 구술시험) ① 서류전형은 대학성적, 학업 및 연구계획서, 자기소개서에 대하여 평가하며, 각 전공에서 별도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술시험은 전공에 대한 지식 및 적성에 대하여 평가하며, 각 전공에서 별도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며, 항목별 배점은 각 전공에서 정한다.

④ 서류전형과 구술시험의 성적은 심사위원의 평가성적을 평균하여 산출한다.

제8조(지원 구비서류)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3.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4. 사진 1매
5. 학업 및 연구계획서(소정양식) 1부
6.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7. 재직증명서(해당자) 1부
8. 국·공립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졸업자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는 관할청 장관 또는 시·도교육감 취학허가서 1부
9. 학력조회확인서 1부 (외국대학 학위이수자 해당)

제9조(전형위원) ① 총괄전형위원장은 항공·경영대학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1.05.01>

② 전형위원장은 각 전공 주임교수로 하며 전형위원은 2명 이상 3명 이내로 하고, 각 전공 주임 교수의 추천으로 항공·경영대학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05.01>

③ 전형위원은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의 성적을 평가한다.

제10조(성적사정) 대학원위원회는 입학전형 결과를 사정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편입학전형) ① 편입학전형의 지원자격은 석사학위과정 전공분야 동일계열이어야 한다.

② 편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결원이 생겼을 시 정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한다.
2. 지원자는 전적 대학원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편입학전형은 서류전형과 구술시험으로 선발한다.

제12조(신입생 등록) 입학전형에서 최종 합격판정을 받은 신입생 및 편입생은 소정 기일 내에 등록 함으로써 입학이 허가된다.

제 3 장 등 록 및 수 료

제13조(등록)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① 정규등록은 본 시행세칙 제16조 수료의 요건을 충족하기까지의 등록을 말한다.

② 연구등록은 석사학위과정에서 수료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연구지도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 학기(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 학기 및 논문제출 학기)에 연구지도를 받기 위한 등록을 말한다.

제14조(연구등록금) ① 연구등록자의 등록금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4.3.04>

② 연구등록자라 할지라도 연구지도 이외의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경우에는 1학점 당 해당 학기 등록금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0., 2019.03.01>

③ 삭제 <2014.03.04.>

④ 삭제 <2018.05.10.>

⑤ 삭제 <2018.05.10.>

제15조(등록금 대체 및 반환) ①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학 시 해당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4.03.04.>

1. 수업일수의 4주 이전에 일반휴학하는 경우
 2. 군입대 또는 질병(4주 이상 입원가료 진단서 첨부)으로 휴학하는 경우
- ② 법령으로 정한 사유로 등록금을 반환할 경우 세부절차 등은 「대학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03.04>

제16조(수료의 요건) 석사학위과정에서 5학기(계절수업 포함) 이상 정규등록을 마치고, 이 세칙 제23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4>

제17조(수료자의 학위논문 제출) ① 수료자는 정하여진 소정의 자격시험(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기간 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논문심사비는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의 소정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재심사를 받는 학기에 심사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전 공 및 지도교수

제18조(전공)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전공 및 세부전공은 <별표 1> 및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8.05.10>

제19조(연구계획서) ① 연구계획서 제출자격은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2개 학기를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16.03.01>

- ②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항공·경영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전공, 지도교수 및 연구과제가 결정된다. <개정 2011.05.01>

- ③ 주임교수는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 중에서 학생이 전공할 분야의 전공교수를 지도교수로 위촉하되, 필요시 1명의 교수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05.01., 2011.09.01, 2015.08.01>

- ④ 지도교수는 정년퇴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 3개 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정한다.

제20조(지도교수의 의무) ① 지도교수는 학생의 연구계획 수립, 수강지도, 제반 연구발표 및 학위 논문 작성을 지도하며, 매 학기말 연구지도학점을 부여한 연구지도보고서를 항공·경영대학 행정실에 제출한다. <개정 2017.03.17>

- ② 지도교수는 학생의 연구와 논문지도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진실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지도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교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05.01., 2015.08.01.>

제21조(지도교수 및 세부전공 변경) ① 지도교수 또는 세부전공의 변경은 학기 초 30일 이내에 소정의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또는 세부전공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항공·경영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해외파견, 퇴직 등으로 인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할 경우 학기 초 30일 기간 외에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05.01., 2014.03.04>

② 예비발표 실시 이후 지도교수 또는 세부전공이 변경된 경우, 예비발표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단,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가 예비발표를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03.04., 2019.03.01>

제22조(전공 변경) ① 전공변경은 석사과정 2차 또는 3차 학기 시작 전에 계열구분 없이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03.04>

② 전공변경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최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 장 이수학점

제23조(교과학점) 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은 24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2013.08.27>

③ 항공산업계열은 소속 전공과목 12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경영계열은 본인 전공과목 중 6학점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17.>

제24조(학점인정) ① 입학 전 국내·외 타 대학원(여기서 타 대학원이라 함은 본 대학교 내의 각 대학원과 본 대학교 외의 각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취득한 학점은 동일한 학위과정의 동일분야로 입학할 경우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 재학기간 중 공식적인 절차에 의하여 본 대학원 이외에서 취득한 학점은 12학점까지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전항의 학점인정은 항공·경영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1항의 학점인정은 입학 후 1차 학기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제2항의 학점인정은 해당 사항 발생 후 1개 학기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1.>

제25조(학·군제휴) ① 군위탁생은 군내 교육기관 및 군제휴에 참여한 타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동일 및 유사교과목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인정한다.

② 학·군제휴 협약에 의한 군위탁생에게 학비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위탁생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군제휴 협약서에 따르며,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개정 2018.05.10.>

제26조(연구지도학점) ① 연구지도학점은 지도교수 배정을 받은 때부터 지도교수에 의하여 매 학기 2학점씩 부여된다.

② 학생은 매 학기말에 연구내용을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도교수는 담당학생으로부터 제출된 연구내용을 평가하여 매 학기말에 연구지도학점을 부여한 연구지도보고서를 항공·경영대학 행정실에 제출한다. <개정 2011.05.01, 2017.03.17>

③ 연구지도학점은 합격(P) 또는 불합격(NP)으로 하며, 합격인 경우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1.09.01>

④ 연구지도학점은 6학점을 취득하여야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수업연한 단축의 경우 4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4>

⑤ 연구지도학점은 평점평균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제27조(선수과목) ① 석사학위과정 입학자에 대하여는 전공 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 대학에 설강된 특정과목(이하 '선수과목'이라 한다)의 이수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선수과목은 입학과 동시에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항공·경영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학기에 선수과목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05.01>

③ 학생에게 과하는 선수과목은 12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선수과목의 이수는 대학원 설강과목 이수에 선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수과목 전부를 이수하기 전에는 교과학점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선수과목 이수는 C 이상으로 한다.

⑥ 선수과목은 합격(P) 또는 불합격(NP)으로 성적을 부여하며,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학점 및 평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3.08.27>

제28조(이수학점 미달) ① 재학 중인 자가 수업연한 내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1학점당 해당학기 등록금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4, 2018.05.10, 2020.02.24>

② 정규등록 학기(5개 학기)를 초과한 자가 교과학점 30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고자 할 경우 1학점 당 해당 학기 등록금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05.01> <개정 2014.03.04., 2018.05.10>

제 6 장 대학원 교과과정 운영

제29조(교과목의 구분) 교과목은 전공 단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제30조(교과목 편성) 매 2년마다 전공 주임교수가 편성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학점수) 모든 과목은 한 과목당 1학기 3학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항공·경영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5.01>

제32조(교과과정 변경) 설정한 교과과정은 2년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2년 미만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과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교과목이 전공과정별로 분리된 학과의 교과목 편성) 교과목이 세부전공과정별로 분리된 전공은 공통교과목과 세부전공과정별 교과목을 구분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34조(교과목 개설) 전공 주임교수는 편성된 교과목 중에서 그 학기에 개설할 과목을 학과 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매 학기 개강 1개월 전에 항공·경영대학 행정실에 제출한다.

<개정 2011.05.01., 2013.08.27, 2018.05.10>

제35조(학점취득 제한) 수업일수(학기 당 15주 이상)의 3분의 1이상 결석하는 자는 해당과목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단, 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결석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03.01>

제36조(수강생의 수) ① 수강생이 15인 미만인 과목은 자동적으로 폐강한다. 단, 항공·경영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설강할 수 있다.

<개정 2011.09.01, 2019.03.01., 2024.01.18, 2024.11.20>

② 과목별 최대 수강인원은 50인 이하로 한다. 단, 연구조사방법론의 경우 최대 수강인원은 30인 이하로 한다. <신설 2024.01.18>

제37조(강의 담당자의 자격) 대학원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교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교 전임교원
2.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교외 인사
3. 항공·경영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 <개정 2011.05.01>

제38조(강의 담당 과목수) 대학원과정 강의는 한 학기 당 1과목(또는 3학점)의 강의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2과목 이상을 담당하여야 할 경우에는 항공·경영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5.01>

제39조 삭제 <2019.01.28>

제 7 장 종합시험

제40조(자격) ① 종합시험은 본 대학원에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② 응시자격은 교과학점 1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성적의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로 한다.

제41조(시행 및 대체) 종합시험은 각 전공 학사운영내규에 의거 실시하며, 구술시험이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03.01.>

[전문개정 2011.09.01]

제42조(종합시험 결과제출) ① 전공 주임교수는 종합시험 결과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01>

② 종합시험 답안지를 비롯한 제반 평가자료는 전공 주임교수의 책임하에 시행 이후 3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28.>

[전문개정 2011.09.01]

제43조(시험과목) ① 종합시험 과목은 각 전공 학사운영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1.09.01, 2019.03.01>

② 삭제 <2011.09.01.>

제44조 삭제 <2011.09.01>

제45조 (배점 및 합격)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70점(과목당 60분)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46조 삭제 <2011.09.01>

제 8 장 학위청구논문

제47조(예비발표) ① 석사학위청구논문 작성의 올바른 진척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위청구논문 최종심사일이 속한 학기의 직전학기까지 예비발표를 행한다.

② 예비발표는 주임교수 주관 하에 실시하고, 소정양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항공·경영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1, 2017.03.17>

③ 예비발표의 심사위원은 주임교수가 해당 전공분야 교수 중에서 3인 이상을 정하여 위촉한다.

④ 예비발표의 심사결과는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이 가하다고 판정할 때 예비발표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48조(제출자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5개 학기(계절수업 포함) 이상 정규등록한 자 <개정 2020.02.24>
2. 교과학점을 24학점(당해 학기 취득예정 포함, 계절수업 포함)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개정 2020.02.24>
3. 연구지도학점을 6학점(당해 학기 취득예정 포함) 이상 취득한 자. 단, 수업연한 단축의 경우 4학점 <개정 2020.02.24>
4.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5. 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에 합격한 후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자

제49조(심사용 논문제출) ① 학생은 논문심사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항공·경영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 심사용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사용 논문은 3부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③ 삭제 <2017.03.17>

④ 심사용 논문은 지정된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심사위원) ① 논문심사를 위하여 각 전공 주임교수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논문심사 위원장 및 위원을 선정하여 항공·경영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5.01>

② 제청된 심사위원 후보 중에서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학위논문은 3인 이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분야 교원 혹은 권위자 중에서 선정한다.

④ 심사위원 중 위원장(주심) 1인을 둔다.

⑤ 논문심사는 논문심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51조 (논문심사)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논문심사 위촉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항공·경영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05.01>

② 논문의 심사는 서류심사와 공개발표 심사로 한다.

③ 서류심사는 제출된 논문을 검토하여 주제, 도입, 전개, 결과 등 논문의 내용과 논문 체제

및 논문의 성과 등을 심사한다.

④ 공개발표 심사는 논문제출자가 심사위원을 포함한 참관자들 앞에서 공개발표하고 질의응답으로 논문의 내용, 체제, 성과 등을 심사한다.

⑤ 논문의 심사 상 필요할 때에는 심사위원이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부분,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논문에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어 충분한 시간이 요한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정되는 경우는 1개 학기 이상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심할 수 있다.

제52조(심사판정) ① 서류심사와 공개발표 심사가 끝난 다음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종합하여 소정양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항공·경영대학 행정실에 제출한다.

<개정 2011.05.01, 2017.03.17>

② 논문심사 평가는 A, B, C, D로 하며, C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③ 논문심사는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평가가 C 이상이어야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53조(논문 재심사) 심사에 불합격한 논문의 제출자는 1개 학기 이상이 경과한 후 다시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54조(논문작성) 학위논문의 작성은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03.01>

제55조 삭제 <2016.03.01>

제56조(학위 논문제출) ① 학위논문은 논문심사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항공·경영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하며, 학위논문(지정부수)과 저작권 이용동의서를 도서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1, 2016.03.01, 2017.03.17, 2020.02.24>

② 학위논문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위청구논문심사의 합격여부를 불문하고 학위수여를 보류하며, 자동적으로 다음 학기 졸업예정자로 간주된다. 단, 1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논문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위논문은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처(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원문을 업로드한 후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서”를 출력하여 항공·경영대학 행정실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1, 2017.03.17>

제57조(심사료) 학위청구논문 심사료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9 장 항공·경영대학원 운영위원회

제58조(설치 및 구성) ① 항공·경영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항공·경영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03.17>

② 운영위원회는 항공·경영대학원장, 각 전공 주임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항공·경영대학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1.05.01.>

제59조 삭제 <2013.08.27>

제60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한다.

제61조(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 10 장 학위수여

제62조(학위수여 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석사학위취득 자격을 가진다.

- 1. 석사학위과정에서 소정의 교과학점을 취득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2. 석사학위과정 5학기(계절수업 포함)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개정 2020.02.24>
- 3.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서 합격 판정된 자 또는 교과학점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제63조(학위수여 의결) 학위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03.17>

제64조(학위수여 의결보고) 대학원위원회가 학위수여 여부를 의결한 후에는 항공·경영대학원장은 학위논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1>

제65조(학위수여) 학위수여는 본 대학원 학칙 제37조에 의거하여 학위 종별로 항공·경영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수여한다. <개정 2011.05.01>

제66조(학위수여 시기) 정규 학위수여 시기는 연 2회로 한다.

- 제67조(학위취소) ① 총장은 석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수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적될 수 있다. <개정 2015.08.01>

제 11 장 계절수업 <신설 2020.02.24.>

제68조 (강좌개설) ①계절수업의 개설은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에 설치할 수 있으며 수업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한다.

- ② 과목당 개설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02.24]

제69조(수강대상 및 이수학점) ① 계절수업은 재학생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

- ② 계절수업에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한 학기 3학점이며 총 6학점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0.02.24]

제70조(수강기간) 계절수업 수강은 정규 4학기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2.24]

제71조(수강료 납부) ① 계절수업 수강을 원하는 자는 수강신청을 하고 정한 기일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수강료는 정규학기 수업료의 학점당 1/6을 납부한다.

[본조신설 2020.02.24]

제72조 (강사료 지급) 강사료는 대학 강사료 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0.02.24]

제73조(기타) 기타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2.24]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학칙시행세칙의 폐지)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은 폐지한다.
- ③ (경과조치) 이 세칙 이전의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 의하여 합격한 영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에 비발표 등 각종 자격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합격한 것으로 본다.
- ④ (학점제 졸업제도 적용) 제62조제3호는 2010학년도 제2학기부터 입학년도에 관계없이 모든 재학생에게 적용한다. 다만, 항공산업계열의 경우 이미 교과학점 30학점을 취득하고 수료한 학생은 구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개정 전 종합시험에서의 과목별 합격은 학과에서 종합시험을 과목별로 시행하는 경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며, 종합시험 및 중간자격시험을 과목별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 ③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제26조제3항에 의한 연구지도학점 성적분류는 2012학년도 3월 입학자 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는 종전 학칙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3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개정 세칙 제23조 및 제26조제6항에 의한 선수과목의 대학원 교과학점 미인정은 2013학년도 9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개정 세칙 제21조제2항에 의한 예비발표 재실시 대상에서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지도교수의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경우 및 시행세칙 변경 이전에 예비발표를 통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7년 3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하계 계절수업부터 실시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3.8.27, 2018.5.10, 2019.10.07, 2024.11.20>

학위과정별 전공 및 세부전공표

과 정		계열	전공	세 부 전 공	학위 종별
항공·경영 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 (항공 산업 계열)	인문 사회	항공우주법 전공 (Aerospace Law)	항공우주법 (Aerospace Law) 항공우주정책 (Aerospace Policy) 사법(Private Law) 공법(Public Law)	법학 석사
		자연 과학	항공교통물류 전공 (Air Transport, Transportation & Logistics)	항공교통 (Air Transport) 교통(Transportation) 물류(Logistics)	이학 석사
			항공운항관리 전공 (Air Operations Management)	항공운항관리 (Air Operations Management)	이학 석사
	석사 학위 과정 (경영 계열)	인문 사회	경영 전공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석사
			항공경영 전공 (Aviation Management)	항공경영 (Aviation Management)	경영학 석사
			관광경영 전공 (Tourism Management)	관광경영 (Tourism Management)	경영학 석사
			테크노경영 전공 (Techno- Management)	기술경영 (Technology Management) 항공기술경영 (Aviation Technology Management)	경영학 석사

* 항공운항관리 전공 영문명은 Aviation Management에서 Air Operations Management으로 변경함.<2024.11.20>

* 항공우주법 전공 영문명은 Air & Space Law에서 Aerospace Law로 변경하며, 항공우주법 세부전공명은 Air & Space Law에서 Aerospace Law으로, 항공우주정책 세부전공명은 Air & Space Policy에서 Aerospace Policy로 변경함.<2024.11.20>

* 항공경영 전공 영문명은 Airline Management에서 Aviation Management으로 변경함.<2024.11.20>

[별표 1-1] <신설 2017.3.17, 2018.5.10>

계약학과 학위과정별 전공 및 세부전공표

구 분	과 정	학 과	전 공	학위종별
항공·경영 대학원	석사	항공경영학과	항공경영	경영학석사